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영화’ 및 ‘비디오물’ 을 ‘영화’ 로 통합 〉

■ 김운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75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2. 조문별 검토	20
가. 법 제명 및 총칙(안 제명 및 제1장)	20
나. 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안 제2장제1절)	29
다.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발전기금 등 (안 제2장제2절~제4절)	35
라. 등급분류 및 영화의 상영 등(안 제2장제5절)	47
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및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안 제2장제6절·제7절)	76
바.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보칙·벌칙(안 제3장~제5장)	89
사. 부 칙	10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윤덕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2024. 7. 8.

다. 회 부 일: 2024.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6년 4월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관한 부분을 통합한 것으로 당시의 영상산업의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러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극장 관객의 수요 감소 등 영상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영상산업과 영화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흡수시켜 영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의를 도입하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규율된 현행 법률의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산업의 법·체계적 기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제1호).

다.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마련 등 영화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13조부터 제31조까지).

마.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함(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바. 영화업자의 신고, 영화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재분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7조까지).

사.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두고 영화필름 등 보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8조 및 제49조).

아.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 및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등 영화의 상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50조부터 제65조까지).

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재지정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영화의 자체등급분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차. 영화시청제공업의 등록, 영업의 승계 및 영화시청제공업의 준수사항 등 영화시청제공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

카. 영화제작업 또는 영화배급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영화제작업자 또는 영화배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타. 영화와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91조부터 제106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법률명을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영화’의 개념에 기존의 ‘비디오물’ 등을 모두 포함시켜 영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의를 도입하고,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규율된 현행법의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본 법률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총 120개 조의 본칙과 10개 조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칙은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벌칙’까지 5개의 장으로 구성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제2장 영화’는 총 7개의 절로 나뉘어 있는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법 제명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 이 법의 목적 및 “영화”의 정의(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 등

구 분		주 요 내 용
제2장 영 화	제1절 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영화노사 정협의회 구성 및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마련 등 영화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제3절 영화발전기금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의 설치·운영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영화업자의 신고,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영화의 공급 및 유통, 영상위원회, 국제영화제 등
	제5절 등급분류 및 영화의 상영 등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재분류에 관한 사항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의 예술적·역사적·교 육적인 발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영상자 료원 및 영화필름 등 보존에 관한 규정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 및 영화 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등 영화의 상영에 관한 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재지정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영 화의 자체등급분류에 관련된 사항
	제6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영화시청제공업의 등록, 영업의 승계 및 영화시청제공 업의 준수사항 등 영화시청제공업에 관련된 사항
	제7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영화제작업 또는 영화배급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영화제작업자 또는 영화배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제3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와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장 보 칙		○영화단체의 설립, 영화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모범적인 영화업자에 대한 지원, 수수료,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5장 벌 칙		○징역·벌금 등 벌칙, 과태료
부 칙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는 종전 6개의 장 및 127개의 조로 구성된 현행의 체계에서 ‘비디오물’에 관한 1개 장 및 7개 조를 삭제하고 이를 ‘영화’에 관한 장·조로 통합하는 것으로, 안 제17조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원하는 것 외에는 내용이 크게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조문이 없으며, 대부분의 개정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을 ‘영화’로 통합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인바, 현행법의 체계와 개정안의 체계를 비교·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현행 및 개정안 체계 비교]

현행	개정안
<u>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u>	<u>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u>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장 영 화	제2장 영 화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제4조(영화노사정협의회)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제5조(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제6조(근로조건의 명시)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7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8조(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9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조의8(직업훈련의 실시)	제10조(직업훈련의 실시)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제11조(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제3조의10(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4조(설치)	제13조(설치)
제5조(법인격)	제14조(법인격)
제6조(정관)	제15조(정관)
제7조(등기)	제16조(등기)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제17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의2(관여 금지)	제21조(관여 금지)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2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23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15조(의결정족수)	제24조(의결정족수)
제16조(회의공개 등)	제25조(회의공개 등)
제17조(소위원회 등)	제26조(소위원회 등)
제18조(예산편성 등)	제27조(예산편성 등)
제19조(감사)	제28조(감사)
제20조(사무국)	제29조(사무국)
제21조(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제30조(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제22조(국고지원)	제31조(국고지원)
제3절 영화발전기금	제3절 영화발전기금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제32조(기금의 설치 등)
제24조(기금의 조성)	제33조(기금의 조성)
제25조(기금의 용도)	제34조(기금의 용도)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제35조(부과금의 징수)
제25조의3(성과의 평가)	제36조(성과의 평가)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제28조의4(영상위원회)
제28조의5(국제영화제)

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선전제한
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
제32조(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 제한)

제6절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

제7절 영화의 상영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제37조(재해예방조치)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37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38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제39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제40조(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1조(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제42조(영상위원회)
제43조(국제영화제)

제5절 등급분류 및 영화의 상영 등
제44조(등급분류)
제45조(등급의 재분류)
제46조(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제47조(제한관람가 영화의 광고·선전 제한)

<절 제목 삭제>
제48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제49조(영화필름등의 제출)

<절 제목 삭제>
제50조(영화상영관의 등록)
제51조(재해예방조치)
제52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53조(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제54조(공공 영화상영관)
제55조(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제56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제57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제58조(영화상영의 신고)
제59조(영화상영의 제한)

제4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제44조(영사 자격자)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46조(영업 등의 승계)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제3장 비디오물

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제2절 등급분류

제50조(등급분류)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제51조(복제 등의 확인)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제54조(등급의 재분류)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제60조(제한관람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제61조(영사 자격자)
제62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63조(영업 등의 승계)
제64조(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65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장 제목 삭제>

<절 삭제>

<절 제목 삭제>

<삭 제>

제66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제67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제68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69조(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제70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71조(직권등급재분류 등)
제72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제73조(복제 등의 확인)
제74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제75조(불법영화의 판매 등의 금지)
제76조(제한관람가 영화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삭 제>
제77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제78조(자료제출의 요청)

제3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제59조(영업의 제한)
제6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63조(영업의 승계)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 제65조(표시의무)
제66조(광고·선전의 제한 등)

제5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 제67조(행정처분 등)
제68조(과징금 부과)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70조(폐쇄 및 수거)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제72조(직무)
제73조(구성)
제74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75조(위원장 등)
제76조(위원의 임기)
제77조(의결정족수)
제78조(회의공개)

제6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삭 제>

- 제79조(영화시청제공업의 등록)
제80조(영업의 제한)
제81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제82조(등록사항의 변경)
제83조(영화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84조(영업의 승계)
제85조(영화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 제목 삭제>

- 제86조(표시의무)

<삭 제>

제7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 제87조(행정처분 등)
제88조(과징금 부과)
제8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90조(폐쇄 및 수거)

제3장 영상물등급위원회

- 제9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제92조(직무)
제93조(구성)
제94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95조(위원장 등)
제96조(위원의 임기)
제97조(의결정족수)
제98조(회의공개)

제79조(소위원회 등)	제99조(소위원회 등)
제80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제100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제8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0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제10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제10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제84조(사무국)	제104조(사무국)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 개정·폐지)	제10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 개정·폐지)
제86조(국고지원)	제106조(국고지원)
제5장 보 칙	제4장 보 칙
제87조(<u>비디오물단체</u> 의 설립)	제107조(<u>영화단체</u> 의 설립)
제88조(<u>비디오물</u>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제108조(<u>영화</u>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제89조(모범적인 <u>비디오물영업자</u> 에 대한 지원)	제109조(모범적인 <u>영화업자</u> 에 대한 지원)
제90조(수수료)	제110조(수수료)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1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1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 칙	제5장 벌 칙
제93조(벌칙)	제113조(벌칙)
제94조(벌칙)	제114조(벌칙)
제95조(벌칙)	제115조(벌칙)
제96조(벌칙)	제116조(벌칙)
제96조의2(벌칙)	제117조(벌칙)
제97조(양벌규정)	제118조(양벌규정)
제98조(과태료)	제119조(과태료)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120조(과태료의 부과)

나. 검토의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6. 4. 28. (구)「영화진흥법」에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관한 부분을 통합하여 제정된 것으로, 2006. 10. 29.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타법개정을 포함하여 총 3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음.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2008년 필름 기반 영화산업이 디지털 형태로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디지털시네마’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2012년에는 이른바 ‘멀티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복합영상물제공업이 신설되었으며, 2015년에는 영화산업 종사자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 및 ‘표준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음. 또한, 2021년에는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영화업계의 인권 및 성평등 문제의식을 반영한 법 개정이 있었으며,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화상영관 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입장권 판매액이 크게 감소한 상영관에 대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면제 근거 신설 등의 개정이 있었음.

최근의 주요 개정은 2022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OTT(Over The Top)’의 급성장을 반영하여 ‘온라인비디오물’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들 OTT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한 현행법이 2023. 3. 28.부터 시행 중에 있음.

이처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새로운 기술 및 개념의 등장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맞춰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이후 극장관객의 급격한 감소와 OTT 플랫폼의 급성장 등에 따라 영화 및 영상산업의 환경이 구조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영화’와 ‘비디오물’을 두 축으로 하는 현행의 법적 규율체계로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없게 되었는데, 현행법이 오히려 영화·영상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¹⁾까지 제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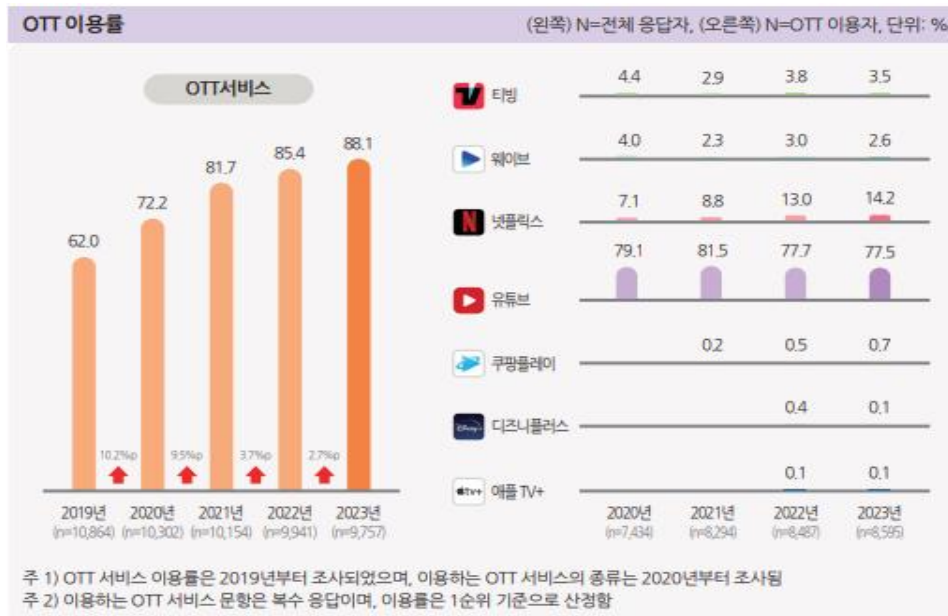
이에 개정안은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 등을 흡수시켜 ‘영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의를 도입하고,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규율된 현행 법률의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비디오산업의 쇠락에 따라 기존 형태의 비디오물이 사실상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영화’와 함께 영상산업의 한 축으로서 ‘비디오물’의 개념을 유지하는 것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등 법체계의 전반적 정비가 필요함.

1)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연구용역, 2023

[연도별 OTT 이용률 추이]



*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023한국미디어패널조사”, 2023.12.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른 국내 OTT 이용률은 2023년도 기준 88.1%로서, 온라인동영상 관련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오프라인 비디오물 관련 시장은 일부 극소수의 경우 외에는 사실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여전히 ‘제3장 비디오물’의 규정을 통해 비디오 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제48조),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²⁾의 설치·운영(제49조), 등급분류(제50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제57조)를 비롯해 다수의 비디오물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비록 이러한 규정들이 현재 OTT 등 ‘온라인비디오물’을 중심으로 실제 적용은 되고 있으나, 당초 이러한 OTT 플랫폼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전면적 개정을 통해 체계 정비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2)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는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내에 소위원회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나, 활발한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임.

둘째, 해외 주요국에서도 ‘영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를 통해 다양한 영상물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³⁾

영국의 경우 ‘영화법(Cinemas Act 1985)’에 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영화상영(film exhibition)’은 TV 방송을 통해 방영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동영상 상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호주의 ‘등급분류법(Classification Act 1995)’은 ‘영화(film)’의 정의에 컴퓨터 게임과 광고를 제외한 ‘모든 시각 이미지 기록의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캐나다와 싱가포르 등에서도 일부 특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전체의 영상물을 영화의 개념에 포함시킨 ‘영화법(Film Act)’을 바탕으로 영상물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⁴⁾

다만, 개정안과 같이 각종 영상물을 ‘영화’라는 개념에 모두 포함하는 것을 바탕으로 법체계 전반을 정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적 정의로서 ‘영화’의 개념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영화’의 개념에 잘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3) 이하 해외사례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연구용역, 2023. 참조

4) 다만,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는 ‘상영시간’ 등을 기준으로 영화와 다른 영상물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고, 특히 독일의 경우 영화관 유료상영을 위한 영화의 개념을 별도로 설정하여 영화 부과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사전적 정의상 ‘영화(映畵)’는 ‘일정한 의미를 갖고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하여 영사기로 영사막에 재현하는 종합 예술’⁵⁾을 의미하나, 사회 통념상으로는 현행 제2조제1호⁶⁾에 따른 정의와 유사하게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시설에서 공중에게 상영할 목적으로 제작된 약 2시간 내외의 영상물’ 등으로 받아들여져 왔음.

최근 상영관 개봉 없이 OTT 등을 통해서 공개되는 영화가 늘어나면서 영화의 개념은 상영관 등 개봉의 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여전히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이른바 ‘시리즈물’ 또는 ‘TV 프로그램’ 등과 구별되는 영상콘텐츠로서 ‘영화’의 개념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개정안이 제시하는 ‘영화’⁷⁾의 개념은 ‘게임물’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만을 제외하고 ‘시리즈물’ 등을 비롯한 모든 장르의 영상물을 포괄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르면 OTT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도 모두 법적으로 ‘영화’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5) 표준국어대사전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7)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게임물

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둘째,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일부 관련 협회 및 OTT 업계 등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음.⁸⁾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는 ‘영화’에 OTT 콘텐츠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것은 영화의 개념에 대한 보편적 인식 및 매체별 정책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개정안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충돌·중복이 우려되고, OTT를 통해 유통되는 국내제작물은 대체로 ‘방송’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TT 등은 미디어 관련 법제으로써 통합적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개정안과 같이 ‘영화’의 정의를 변경하는 경우 OTT를 포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영상물, 아울러 방송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큰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극장 상영을 전제로 하는 영화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OTT는 기본적 성격과 규율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영화’로 흡수하여 통합적으로 정의·규율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나아가 현행법에 따른 영화 대상 규제가 OTT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OTT에 대한 최소규제를 견지해온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것임.

8) 참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영화’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임. 그 밖에 협회 및 민간업계 등 의견은 [참고] 자료 참조

결론적으로,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전부 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비디오 산업’의 쇠락 및 OTT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법률의 전부개정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관련 부처 및 협회·업계 등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영화’와 ‘비디오물’을 통합하여 전부 개정하는 경우에도,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하여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각종 규제를 모두 통합함에 따라 어느 한 쪽에만 적용하던 규제를 다른 한 쪽에도 확대하여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⁹⁾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규제 확대 가능성 및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개정안에 따른 ‘영화’의 개념과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영화’의 개념이 불일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화’의 정의에 모든 영상물을 포함시키는 방안 외에도, ‘영상물’이라는 정의를 별도로 설정하여

9) 예를 들어, 현행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0까지에 규정된 ‘표준보수 지침의 준수’, ‘근로조건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안전사고 예방조치’, ‘성폭력 예방교육’ 등 각종 규제는 현재 영화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행의 비디오물업자에게도 이러한 규제가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음. 또한, 현재 ‘영화’의 경우 현행 제32조에 따라 모든 등급의 영화에 대한 광고·선전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거치는 반면, ‘비디오물’의 경우 제66조에 따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만 유해성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유해성 확인의 대상이 모든 등급의 광고·선전물로 확대되어 적용됨.

반대로, 현행 제50조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비디오물 제작·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를 경우 모든 영화에 대해 정당한 권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규제를 확대되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규제 확대의 타당성·필요성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는 ‘2. 조문별 검토’ 참조

‘영화’ 외의 영상물을 포함시키면서 (가칭) 「영화 및 영상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영상진흥기본법」¹⁰⁾을 통합하여 영상물과 관련한 전반적인 법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¹¹⁾

10) 참고로, 「영상진흥기본법」은 1995년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그 이후 조문 한글화 외에는 한 차례도 개정이 없었으며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영상진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11) 참고로, OTT 등 등장을 반영하여 법 제명을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영상 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617)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으나, 당시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2. 조문별 검토

가. 법 제명 및 총칙(안 제명 및 제1장)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목적 및 정의 규정에서 ‘비디오물’ 등을 삭제하여 ‘영화’로 통합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u>	<u>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u>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u>영화 및 비디오물</u> 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영화</u>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u>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u> 에 담긴 저작물로서 <u>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u> 을 말한다. <단서 신설>	1. ----- ----- <u>디지털매체</u> ----- ----- <u>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u>

<신 설>

<신 설>

2. (생 략)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 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생 략)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7.·8. (생 략)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게임물

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현행과 같음)

3. -----
----- 제38조에 따른 -----.

4. -----
----- 문화체육관광부령이 -----.

5. (현행과 같음)

6. -----
----- 문화체육관광부령이 -----.

7.·8. (현행과 같음)

9. -----
-----.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
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
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
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
으로 하는 자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
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
다)은 제외한다.

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
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
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
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
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가. 영화제작업자: 영화 제작·복
제를 -----

<삭 제>

나. 영화배급업자: 영화를 수입하
거나 배급·공급-----

다. 영화상영업자 : -----

10. -----

----- 대통령령이 -----

----- 한
다)을 -----.

11. -----
----- 제4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한관람가 -----
-----.

<삭 제>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 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 에 한정한다)	
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 물을 말한다.	<삭 제>
13. “비디오산업”이라 함은 비디오물 의 제작·활용·유통·공급·수출 ·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 다.	<삭 제>
14.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 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 을 말한다.	<삭 제>
15.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 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 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 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 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 는营业을 말한다.	<삭 제>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营业을 말한다.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 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 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12. “영화시청제공업”-----. 가. 영화감상실업: ----- ----- 영화 시청기자재 ----- 영화를 -----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나. <u>비디오물소극장업</u>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u>비디오물 시청기자재</u>를 갖추고 <u>비디오물만</u>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다. <u>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u>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u>비디오물 시청기자재</u>를 갖추고 <u>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u>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라. <u>복합영상물제공업</u>: <u>비디오물감상실업</u>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마. 그 밖의 <u>비디오물시청제공업</u> :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u>비디오물 시청기자재</u>를 갖추고 <u>비디오물</u>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17. “비디오물영업자”라 함은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8.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u>관객이</u>----- ----- ----- ----- 나. <u>영화소극장업</u>: ----- ----- <u>영화 시청기자재</u> ----- <u>영화만</u>----- ----- ----- 다. <u>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업</u>: --- ----- <u>영화</u> <u>시청기자재</u>----- ----- <u>영화만</u>----- ----- ----- 라. ----- <u>영화감상실업</u> ----- ----- ----- ----- 마. ----- <u>영화시청제공업</u>: ----- ----- ----- ----- <u>영화 시청기자재</u>----- ----- <u>영화를</u> ----- ----- <삭 제> 13.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	---

<u>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u>	<u>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u> <u>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u> <u>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u>
<u>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u> <u>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u> <u>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u> <u>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영</u> <u>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u> <u>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u> <u>는 것을 말한다.</u>	<u><삭 제></u>
<u>20. “내용정보”란 영화·비디오물의</u>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u>14. ----- 영화-----</u> ----- ----- ----- -----.
<u>21. “영화근로자”란 영화산업에 종사</u> 하는 <u>사람</u>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u>사람</u>을 말한다.	<u>15. -----</u> -- <u>자</u>----- --- <u>자를</u> -----.
<u>22. · 23. (생 략)</u>	<u>16. · 17. (현행 제22호 및 제23호와</u> 같음)

2) 검토의견

먼저, ‘영화’에 대한 정의조항인 안 제2조제1호는 기존의 ‘비디오물’ 및 ‘온라인비디오물’ 등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 표와 같이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정의는 저장매체 및 유통방식·재생수단 등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개정안과 같이 통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영화’의 정의 관련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개념요소	현행			개정안
	‘영화’	‘비디오물’	‘온라인비디오물’	‘영화’
영상	연속적인 영상이	연속적인 영상이	-	연속적인 영상이
저장매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	필름 또는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	저작물로서	저작물로서	-	저작물로서
유통방식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등에서
재생수단	-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유형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상영하거나 [...]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	제작한 것	제작된 것	제작된 비디오물	제작된 것
제외사항	-	게임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에 한함)	-	게임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에 한함)

다만, 안 제2조제1호단서의 나목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에서 ‘영화가 수록된 것’을 제외하고 있는데, ‘영화’의 정의 조항 내에서 ‘영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일부 사항을 제외하는 것은 일종의 순환논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¹²⁾

다음, 안 제2조제9호는 ‘비디오물제작업’ 및 ‘비디오물배급업’의 정의를 삭제하고 이를 ‘영화업자’로 통합하여 정의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임. 또한, 개정안은 종전의 ‘영화수입업자’를 ‘영화배급업자로’ 통합하고 있는바, 현행법에도 ‘영화수입업자’는 정의조항만 있을 뿐 별도의 관련 조문이 없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봄.

[‘영화업자’의 정의 관련 현행 및 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안
영화업자	비디오물업	영화업자
영화제작업자	비디오물제작업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비디오물배급업	영화배급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업자

다음, 안 제2조제12호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는 명칭을 ‘영화시청제공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안 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업자’와 명칭의 통일성을 위해 ‘영화시청제공업’을 ‘영화시청제공업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12) ‘영화’의 정의에 모든 종류의 영상물을 포함시키는 것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는 앞의 ‘1. 총괄 검토’ 중 ‘개정안의 추진배경 및 전부개정 필요성’ 참조

[‘ 시청제공업’ 관련 현행 및 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안
<u>비디오물</u> 시청제공업	<u>영화</u> 시청제공업
가. <u>비디오물</u> 감상실업	가. <u>영화</u> 감상실업
나. <u>비디오물</u> 소극장업	나. <u>영화</u> 소극장업
다. 제한관람가 <u>비디오물</u> 소극장업	다. 제한관람가 <u>영화</u> 소극장업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마. 그 밖의 <u>비디오물</u> 시청제공업	마. 그 밖의 <u>영화</u> 시청제공업

다음, 안 제2조제13호의 경우 지난 2023. 10. 31. 법률 개정¹³⁾을 통해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도록 규정한 현행 제18호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그 외에도 개정안 전체적으로 2023. 8. 8. 법률 개정¹⁴⁾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음.

그 밖의 부분은 ‘영화’ 및 ‘비디오물’을 통합하고 기존의 인용 조문과 가지 조문의 조 번호 등을 수정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13)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0호, 2023. 10. 31. 일부개정

14)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나. 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안 제2장제1절)

1) 개정안의 요지

안 제2장제1절은 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통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장 영화	제2장 영화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 4조에 따른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 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 ----- - 제13조----- ----- 제4 8조----- ----- -----.
② 제1항에 따른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 8. (생략)	7. ~ 10. (현행 제6호의2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

9. <u>디지털시네마 진흥 기본방향, 디지털시네마 산업기반조성,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u> 10. <u>영상기술 개발·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u> 11. ~ 13.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디지털시네마</u> 발전을 위하여 <u>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u>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u>제3조의2</u> (생략) <u>제3조의3</u>(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권장하여야 한다.</u> ②·③ (생략) <u>제3조의4</u> (생략) <u>제3조의5</u>(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생략)	<삭 제> 11. -----, <u>영화상영관</u> ----- 12. ~ 15. (현행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③ ----- <u>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영화의</u> ----- <u>제2항제11호와 관련된 기술표준</u>----- ----- ----- ----- -----. <u>제4조</u> (현행 제3조의2와 같음) <u>제5조</u>(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① ----- ----- <u>제4조</u>-----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u>제6조</u> (현행 제3조의4와 같음) <u>제7조</u>(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현행과 같음)
--	---

시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진흥시책에는 비디오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창작활동의 활성화

3. 수출촉진과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4. 비디오물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6.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7. 전문인력의 양성

8. 비디오물 관련 분야의 기반 구축 및 집적지(集積地)의 조성·운영

9. 이 법을 위반하여 제작·수입·배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하 “불법비디오물”이라 한다)의 지도·단속

10. 불법비디오물에 대한 자율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비디오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검토의견

먼저 장(章)의 구분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영화’와 ‘비디오물’에 관하여 모두 규율하고 있으므로 ‘제2장 영화’ 및 ‘제3장 비디오물’과 같이 장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제3장 비디오물’을 삭제하고 이를 ‘제2장 영화’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제2장 영화’의 제목을 삭제하고 개정안이 절(節)로 구분한 항목들을 장으로 올려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안 제3조는 ‘디지털시네마’ 등의 정의 조항 삭제에 따라 영화진흥기본계획 포함사항 중 ‘디지털시네마’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디지털시네마’와 관련하여 기술표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영화’의 기술표준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인바, 특별한 문제가 없음.

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12조까지와 관련하여, 개정안이 ‘영화업자’에 ‘비디오물업자’ 등을 통합함에 따라 현재 영화관 상영용 영화를 제작·배급·상영하는 영화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표준보수 지침의 준수’, ‘근로조건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안전사고 예방조치’,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규제가 영화관 상영용 외의 영화를 제작·배급·상영하는 영화업자(現 비디오물제작·배급업자)에게도 확대·적용되는바,¹⁵⁾ 이에

대해서는 규제 확대를 우려하는 관련 협회·업계의 반대의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그 밖의 부분은 ‘비디오물’ 개념의 삭제에 따라 비디오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을 통합하고 기존의 인용 조문과 가지 조문의 조 번호 등을 수정하여 정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15)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OTT 사업자와 같이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려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경우 현행 제57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 등 신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개정안에 따라 '영화업자'로 통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안 제37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다.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발전기금 등(안 제2장제2절~제4절)

1) 개정안의 요지

영화진흥위원회에 관한 안 제2장제2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총 위원수를 현행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에 포함될 수 있는 영화업자의 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화’ 및 ‘비디오물’의 통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영화발전기금에 관한 안 제2장제3절 및 영화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안 제2장제4절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통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내용변경 사항은 없음.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u>제4조</u> · <u>제5조</u> (생략)	<u>제13조</u> · <u>제14조</u> (현행 제4조 및 제5조와 같음)
<u>제6조</u> (정관) ① (생략)	<u>제15조</u> (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u>영화진흥위원회</u> ----- ----- -----.
<u>제7조</u> (생략)	<u>제16조</u> (현행 제7조와 같음)
<u>제8조</u>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u>1인</u> 및 부위원장 <u>1인</u> 을 포함한 <u>9인</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u>제17조</u>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 <u>1명</u> 및 ----- - <u>1명</u> 을 포함한 <u>15명</u> 이내----- -----.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생략)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 ③ (생략)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생략)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비디오물

② -----

----- 자 -----

-----.
----- 5명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필요한 -----
-----.

제18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따른 -----

-----.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

----- 자는 -----
-----.

1. -----
----- 법관을 -----

2. (현행과 같음)

3. -----
----- 자

<삭 제>

<u>영업자</u> 6. (생략) <u>제12조의2</u> (생략) <u>제13조</u>(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생략)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u>제12조</u>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생략) <u>제14조</u>(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4. (생략) 5. <u>제23조</u>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6.·7. (생략) <u>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u> 8. ~ 11. (생략) 12. <u>제27조</u>에 따른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13. <u>제39조</u>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14. <u>제40조</u>에 따른 한국영화의무상영	4. (현행 제6호와 같음) <u>제21조</u> (현행 제12조의2와 같음) <u>제22조</u>(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u>제20조</u> ----- ----- 2. (현행과 같음) <u>제23조</u>(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32조</u>----- ----- 6.·7. (현행과 같음) 8. <u>영화</u>----- 9. ~ 12. (현행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13. <u>제38조</u>----- 14. <u>제56조</u>----- 15. <u>제57조</u>-----
--	---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의2. (생략)

15.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16. · 17. (생략)

②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15조 (생략)

제16조(회의공개 등) ①영화진흥위원회 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② (생략)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6

16. (현행 제14호의2와 같음)

<삭 제>

17. · 18. (현행 제16호 및 제17호와 같음)

② ----- 제1항제5호-----

-----.

제24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25조(회의공개 등) ① -----
-----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
-----.

-----.

② ----- 영화진흥위원회 규정이 -----
-----.

제26조(소위원회 등) ① -----
-- 제23조-----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3조제1항제6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u>제18조</u>(예산편성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u>제19조</u>(감사)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감사 <u>1인</u>을 둔다. ②·③ (생략) <u>제20조</u>(사무국) ① (생략)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u>1인</u>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u>제21조</u>(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 인터넷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u>같은</u>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u>제22조</u> (생략) 제3절 영화발전기금 <u>제23조</u>(기금의 설치 등) ①영화예술의	<u>호</u>----- ----- ----- -----. <u>제27조</u>(예산편성 등) ① ----- -- <u>대통령령</u>이 ----- ----- -----. ② (현행과 같음) <u>제28조</u>(감사) ① ----- ----- ----- <u>1명</u> ----- -----. ②·③ (현행과 같음) <u>제29조</u>(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u>1명</u> ----- ----- -----. <u>제30조</u>(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 ----- ----- ----- <u>동</u> ----- ----- -----. <u>제31조</u>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3절 영화발전기금 <u>제32조</u>(기금의 설치 등) ① -----
--	--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u>영화·비디오물산업</u>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u>제4조의</u> 규정에 따른 <u>영화진흥위원회</u>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u>제24조</u>(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 (생략) 3. <u>제25조의2</u>의 규정에 따른 <u>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u> 4. (생략) 5. 그 밖에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수입금 <u>제25조</u>(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 4. (생략) 4의2. <u>제38조제1항</u>에 따른 <u>전용상영관의 지원</u> 5. ~ 8의3. (생략) 9. <u>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지원</u>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u>영화향유권</u>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0의2. · 11. (생략)	----- <u>영화산업</u> ----- ----- -----. ② --- <u>영화진흥위원회</u>----- ----- -----. ③ (현행과 같음) <u>제33조</u>(기금의 조성)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35조</u>----- ----- 4. (현행과 같음) 5. ----- <u>대통령령</u>이 ----- --- <u>제34조</u>(기금의 용도)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52조제1항</u>----- 6. ~ 14. (현행 제5호부터 제8호의3까지와 같음) <삭 제> 15. ----- <u>영화향수권</u> ----- 16. · 17. (현행 제10호의2 및 제11호와 같음)
---	--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②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2. 3. (생략)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

18. ----- 영화산업-----

② 제1항제18호-----

제35조(부과금의 징수) ① ----- 영화산업-----

1. ----- 제52조제1항제2호-----

2. 3.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

③ -----

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 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제25조의3(성과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제56조제1항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성과의 평가) ① -----

----- 제34조제1항 -----

----- 3
월말 -----
-----.

② ----- 제1항 -----

-----.

③ ----- 제1항 -----

----- 시정을 요하는 -----

-----.

④ (현행과 같음)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37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 신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③ (생략) <u>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u> ① (생략) ② <u>제1항의</u> 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정절차 · 방법 및 한국영화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u>필요한</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u>제28조 (생략)</u> <u>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u> ① <u>제26조</u>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u>제28조의3 ~ 제28조의5 (생략)</u> <u>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u> ① <u>비디오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안에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u> ② <u>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해당하는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u> ②·③ (현행과 같음) <u>제38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u>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u>----- ----- -----. ③ ----- ----- <u>필요한</u> ----- -----. ④ (현행과 같음) <u>제39조 (현행 제28조와 같음)</u> <u>제40조(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u> ① <u>제37조</u>----- ----- ----- ----- ----- -----. ② (현행과 같음) <u>제41조 ~ 제43조 (현행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5까지와 같음)</u> <u><삭 제></u>
--	--

③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비디오산업진 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과 비디오산업분야에 관하여 전 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비디오산업진흥위원 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

2) 검토의견

먼저, 안 제2장제2절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총 위원 수 및 위원에 포함될 수 있는 영화업자의 수를 확대하는 것은 ‘영화’의 개념을 기존의 ‘비디오물’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에 대응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그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봄(안 제17조).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의 정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원 수를 확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고, 영화 관련 협회¹⁶⁾들도 위원 수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개정안 심사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16)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다음, 영화발전기금에 관한 안 제2장제3절은 기금의 설치 목적 중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영화산업의 진흥·발전’으로 수정하고, 기금의 용도에서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을 삭제하는 등, ‘비디오물’ 및 ‘비디오산업’ 개념의 삭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참고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디오물’ 개념의 삭제 및 ‘영화’ 정의의 확장 등에도 불구하고 부과금의 부과·징수 대상이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님.

안 제2장제4절 등 그 밖의 부분은 ‘영화’ 및 ‘비디오물’을 통합하고 기존의 인용 조문과 가지 조문의 조 번호 등을 수정하여 정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라. 등급분류 및 영화의 상영 등(안 제2장제5절)

1) 개정안의 요지

안 제2장제5절은 등급분류 및 영화의 상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그 중 안 제44조·제45조는 현행 제2장제5절 중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해당하는 사항과 현행 제3장제2절 중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안 제46조·제47조는 광고·선전의 제한, 안 제48조·제49조는 한국영상자료원 등(현행 제2장제6절), 안 제50조부터 제65조까지는 영화의 상영 등(현행 제2장제7절)에 관한 내용으로, 각 절의 구분을 삭제하고 ‘영화’ 및 ‘비디오’ 통합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 외에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음.

한편, 자체등급분류(현행 제3장제2절)에 관한 안 제66조부터 제78조까지는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를 삭제함에 따라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영화’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음.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절 <u>상영등급분류 및 광고·선전제한</u>	제5절 <u>등급분류 및 영화의 상영 등</u>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u>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u>	제44조(등급분류) ① <u>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를 제작 또는</u>

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
· 단편영화

2.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상영 또는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제9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

1. -----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

2. 3. (현행과 같음)

4.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화.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영화

6. 그 밖에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영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 의한 영화의 등급은 그 내용, 영상 및 대사 -----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

 ---. -----

 경우에 한하여 등급-----
 --- 예고편영화(술·담배에 관한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는 제1호 -----
등급을 분류하고 ----- 예고편영화(술·담배에 관한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는 청소년 -----.

1. 전체관람가: -----
 - 자가 관람 및 시청-----
2. ----- 관람가: -----
자가 관람 및 시청-----
3. ----- 관람가: -----
자가 관람 및 시청-----
4. ---- 관람불가: 청소년은 관람 및 시청-----
5. 제한관람가: -----

 ----- 상영, 시청제공, 유통 및 -----

③ ----- 제2항을 위반하여 등급-----
 ----- 상영·유통하거나 시청제공을 하여서-----.

④ -----

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생략)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영화의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 (생략)

<신설>

----- 관람 또는 시청
----- 자를 입장 시키거나 시청하게 하여서-----

---. -- 관람하거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에 관한 동의가 있는 --.

⑤ ----- 제5호의 등급-----

----- 입장시키거나 청소년이 시청하게 하여서-----.

⑥ ----- 제1항 본문에 의하여 ---
등급을 변조하거나 등급분류를 ---

----- 상영·유통하거나 시청제공을 하여서-----.

⑦ (현행과 같음)

⑧ -----
- 등급-----
-----.

⑨ ----- 등급-----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 등급-----

2. (현행과 같음)

⑩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영화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그 영

제32조(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①영화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물은

제46조(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
의 제한) ① -----

제한

관람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

② 제1항에 따른 -----

----- 제42조의2에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4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의 내용 또는 등급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

-----.

제47조(제한관람가 영화의 광고·선전 제한) 제한관람가 -----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①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② (생략)

③ 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④ 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등의 보존과 보상
2.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3. 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 제한상영관 또는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 안-----

----- 제한상영관 또는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 밖-----.

<삭 제>

제48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①

영화와 -----

----- 영화의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정관이 -----
-----.

④ -----
-----.

1. 제49조-----

2. ---- 영화와 -----

3. ---- 영화와 -----

4. ----- 영화와 ----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5.·6. (생 략)

⑤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 략)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 ①영화제
작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해
당 영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등 또
는 그 복사본과 대본(臺本)(이하 “영
화필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상자료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영화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영화를 수입 또는 제작
한 자가 해당 영화가 보존되기를 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필름등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화필름등에 대한 보상에 필
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7절 영화의 상영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① (생 략)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5.·6. (현행과 같음)

⑤ ----- 법에

-----.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영화필름등의 제출) ① -----
-----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급-----

----- 대통령령
이 -----
-----.

② ----- 제44조제1항 -----

-----.

③ -----
- 따른 영화필름-----
----- 대통령령이 ----- 의
하여 정당한 -----.

-----.

<삭 제>

제50조(영화상영관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통령령이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7조(재해예방조치)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2. (생략)

3. 청소년관람가영화(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②·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재해예방조치) ① 제50조제1항에 따른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제44조제2항제1호-----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 ~ 제39조 (생략)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①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화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53조 ~ 제56조 (현행 제38조의2부터 제39조까지와 같음)

제57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
----- 대통령령이 -----

-----.

제58조(영화상영의 신고) ① -----

----- 제44조제1항
----- 영화를 -----

-- 상영 중-----

-----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
-----.

-----.

② ----- 제56조-----

-----.

-----.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영화상영의 제한) -----

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한다. 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 3. (생략) 4.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상영하는 영화 5.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화 제4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①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한상영관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	----- ----- -----. 1.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급----- ----- 2. ----- 등급----- 3. (현행과 같음) 4. 등급----- ----- 5. 제58조를 ----- ----- 제60조(제한관람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① ----- ----- 제한관람가 -----. ② ----- 제한관람 ----- ----- 다른 ----- ----- -----. ③ ----- 제44조제2항제1호----- -----. 제61조(영사 자격자) ----- -- 대통령령이 ----- ----- ---- 자로 ----- -----.
---	--

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한 때
3.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 4의2.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5.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40조에 따른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
6. 제42조에 따른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7.·8. (생략)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 대통령령이 -----
-----.

제62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

----- 대통령령이 -----
----- 의하여 3월 -----

-. -----

--.

1. (현행과 같음)
2. 제44조제3항-----

3. 제47조를 -----
----- 제한상영관 또는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 밖-----
4. 제50조제1항-----

5. 제51조제4항-----

6. ----- 제57조-----
----- 미달한 때
7. 제59조-----

- 8.·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 ② ----- 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 중 제한상영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6조(영업 등의 승계) ①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② (생략)

제47조 (생략)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

③ ---- 따른 -----

-----.

제63조(영업 등의 승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62조제1항 -----

-----.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 (현행 제47조와 같음)

<삭 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등급분류

제50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
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
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
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
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
청에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 다
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
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
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
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
공하는 비디오물

<삭 제>

<삭 제>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는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해당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④ 삭제

⑤ 제3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제29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⑦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방법,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

제66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제1항-----

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공급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나. (생략)

----- 관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영화-----

----- 영화의 제공 -----

----- . ----- 제44조제2

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화는 -----

----- .

② -----

-- 영화를 -----

----- 영화의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를 -

나. (현행과 같음)

2. 최근 5년간 <u>제50조의6제1항</u>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최근 5년간 <u>제50조의6제1항</u>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3. <u>제50조의8제4항</u>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⑤ (생략) <u>제50조의4</u>(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 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u>제50조제5항</u>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u>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u>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 5. (생략) <u>제50조의5</u>(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u>제50조의2제1항</u>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u>온라인 비디오물</u>은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2. ----- <u>제70조제1항</u>-----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제70조제1항</u>----- ----- ----- 3. <u>제72조제4항</u>----- ----- ⑤ (현행과 같음) <u>제68조</u>(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 사항) ----- -----. 1. <u>제44조제7항</u>에 따른 <u>영화</u> ----- ----- ----- 2. ----- <u>영화에 대하여 제86조</u>----- ----- ----- 3. ~ 5. (현행과 같음) <u>제69조</u>(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u>제66조제1항</u>----- ----- <u>영화</u>는 -----
---	---

가 공급 및 제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5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생략)

② ~ ⑤ (생략)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제44조제1항-----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

----- 제66조제1항 -----

1. (현행과 같음)

2. 제68조-----

3. 제71조제4항-----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

----- 영화가 제44조제2항

제4호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

무)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2.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 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5. ~ 7. (생략)

② (생략)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의4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제72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

-----.

1. 영화-----

2. 영화-----

3. 제68조제1호 -----

4. 제68조제3호-----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68조제2호-----

④ -----

----- 제68조-----

-- 제71조제4항-----

권고할 수 있다.

제51조(복제 등의 확인) ①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신청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이며 동일한 내용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

제73조(복제 등의 확인) ① -----
--- 영화를 -----
- 영화로 -----

----- 영화와 -----

-----.
----- 영화와 ---
----- 영화로 -----

제44조제1항-----

② ----- 제1항-----

③ (현행과 같음)

제74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① -----

----- 제44조제1항 또는 제66조
제3항----- 제
73조제1항-----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0조 제5항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확인증명서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2.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
3.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비디오물
4.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
5.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

-.

② ----- 따른

----- 제44

조제9항-----

- 제73조제2항-----

-----.

제75조(불법영화의 판매 등의 금지) ①

----- 영화를 제작·유통 -----

1. 제44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

- 영화

2. 제73조제1항-----

----- 영화

3. 제71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

----- 영화

<삭 제>

4. -----

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

②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제50조제3항에 따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교부되는 등급분류증명서 및 확인증명서는 제63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 제공 및 유통제한)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는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등급의 재분류) ① 제50조 또는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화

② ----- 영화를 제44조제2항-----
----- 아
니 된다. -----

③ 제44조제9항 및 제73조제2항-----
----- 제84조-----
-----.

제76조(제한관람가 영화의 시청 제공 및 유통제한) ① -----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
----- 영화를
-----.

② ----- 영화를 -----
-----.

③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에서는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영화를 -----
-----.

<삭 제>

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을 다시 분류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 통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87조에 따른 비디오물단체(이하 “비디오물단체”라 한다)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2. 제5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2제3항

제77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

----- 영화
에 -----
- 대통령령이 -----
---- 제107조에 의한 영화단체(이하 “영화단체”-----

-----.

1. 제44조제1항 및 제2항-----

2. 제45조-----

제78조(자료제출의 요청) -----

----- 제44조, 제45조 및 제66조제

및 제54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광고·선전의 제한 등) ①비디

오물(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디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

<삭 제>

<u>④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 물의 내용 또는 등급과 다른 내용이 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 소극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⑥제1항에 따른 유해성 여부의 확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u>	
---	--

2) 검토의견

먼저, 안 제44조·제45조의 등급분류 규정 통합과 관련해서는 현행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와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나 요건 및 등급 구분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두 내용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임.

다만, 현재 ‘비디오물’의 예고편 및 광고는 등급분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44조제1항의 등급분류 대상 영화에 ‘영화상영관 등에서 영화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예고편 및 광고영화만이 포함되도록 그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안 제44조제2항은 ‘술·담배 광고영화’의 경우 ‘전체관람가’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중 하나로만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된 경우에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청소년에게 유해한 술·담배 관련 광고영화를 제한적으로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주류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 시행령¹⁷⁾에 따라 이미 전체관람가나 12세·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는 상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담배에 관한 광고도 위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이미 영화상영관에서의 상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¹⁸⁾ 등을 고려할 때, 조문을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겠음.

다음으로, 안 제44조제10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 신청자에 대하여 해당 비디오물의 제작·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현행 제50조제2항을 영화 상영

1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 주류광고의 기준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에서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광고를 상영하지 않을 것

18)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 …(중략)… 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 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위 보건복지부령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음

등급분류 규정과 비디오물 등급분류 규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옮겨 규정한 것임.

다만, 현재 ‘영화’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 현행의 ‘비디오물’에 관해서도 이러한 절차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44조제10항에 따른 확인절차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자체등급분류에 관한 안 제66조제2항 및 제73조 등의 조문도 그에 맞추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으로 안 제46조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르면 비디오물의 경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만이 청소년 유해성 확인 대상임에도 개정안은 모든 등급을 대상으로 유해성 확인을 규정하고 있어 규제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는바, 전체관람가나 12세·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경우 청소년 유해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안 제46조제3항의 경우 같은 조 제2항 단서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조문 정리가 필요해 보임.

다음, 안 제48조의 한국영상자료원 관련 규정 및 안 제49조의 영화 필름 제출 등 규정을 비롯해 안 제50조 이하의 규정들은 현행 체계에서는 모두 별도의 절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내용과 성격이

서로 다른 규정을 모두 안 제2장제5절인 ‘등급분류 및 영화의 상영 등’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체계 이해의 용이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각 절의 구분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다음, 안 제62조제3호는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사유로 ‘제47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또는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업무영역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안 제75조·제76조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현행 제53조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을 규정한 현행 제53조의2를 삭제하지 않고 이를 영화에 관한 규정으로 일부 수정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안 제44조 및 안 제60조의 내용과 일부 유사·중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문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 밖의 부분은 ‘영화’ 및 ‘비디오물’을 통합하고 기존의 인용 조문과 가지 조문의 조 번호 등을 수정하여 정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및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안 제2장제6절·제7절)

1) 개정안의 요지

영업의 신고·등록·운영에 관한 안 제2장제6절 및 등록취소 등 행정 조치에 관한 안 제2장제7절은 현행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을 ‘영화업자등’으로 변경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화시청제공업’으로 변경하는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통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u> <u>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u> <u>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u> <u>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u> <u>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u>	<u>제6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u> <u><삭 제></u>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	제79조(영화시청제공업의 등록) ① 영화시청제공업-----
---	---

자 하는 자는 <u>문화체육관광부령</u>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u>비디오물</u>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제한관람가 비디오물소극장</u>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생략) <u>제59조(영업의 제한) 제57조 및 제58조</u>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u>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u>을 할 수 없다. 1. <u>제67조제1항</u>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u>지나지</u>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 <u>제67조제1항</u> 또는 제2항에 따라	----- <u>문화체육관광부령</u>이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영화를</u> ----- ----- ② ----- ----- <u>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u>----- ----- -----. ③ (현행과 같음) <u>제80조(영업의 제한) 제79조에 의하여</u> ----- ----- ----- <u>같은 조에 의한</u> ----- -----. 1. <u>제87조제1항</u> ----- <u>따른</u> ----- ----- <u>경과되지</u> ----- ----- ----- ----- ----- 2. <u>제87조제1항</u> ----- <u>따른</u>
---	---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비디오물제작업은 제외한다)

제6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여 교

----- 경과되지

----- 때

제81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
----- 제37조제2항-----
----- 제79조

-----.

제82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제79조에 따라 등록을 -----

- 변경등록을 -----.

<삭 제>

② -----
-- 변경등록을 한 -----

등록증을 -----.

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신고증·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생략)
2.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정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나. (생략)
4.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5.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변경등록의 -----

-----.

제83조(영화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영화시청제공업-----

--.

1. (현행과 같음)
2. 영화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 한하여 -----.

---- 대통령령이 -----
-----.
3. 영화감상실업 -----

가.·나. (현행과 같음)
4. 영화감상실업,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업 -----

5. 문화체육관광부령이 -----

제63조(영업의 승계)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물배급업
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이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라 한다)가
그营业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
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
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등
의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기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기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
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생략)

제84조(영업의 승계) ① 제37조 또는

제79조-----

영화업자 또는 영화시청제공업자(이
하 “영화업자등”-----

--- 영화업자등의 -----

-----.

② -----

----- 영화업자등의 영화-----

----- 영화업자등의 지위-----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3호까지-----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 시설·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64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비디오물 제작업자등이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비디오물 제작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제65조(표시의무) ① 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 마다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④ -----

----- 영화에 -----

----- 영화제작업자등 -----
-----.

⑤ 제85조 -----
----- 영화업자
등이 -----

----- 영화업
자등은 ----- 영화
업자등의 -----.

제85조(영화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79조 -----

----- 문화체육관광부
령이 -----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6조(표시의무) ① -----
영화를 -----
----- 영화마다 -----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67조(행정처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생 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영화의 -----

----- 제4

4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제7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87조(행정처분 등) ① -----

----- 영화제작업 또는 영화배급

업-----

-----.

1. (현행과 같음)

3. 제75조제1항-----

2. 제37조제1항-----

4. (현행과 같음)

② ----- 영화시청제
공업-----

-----.

-----.

1. 거짓 -----

로 등록한 때	-----
2.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 -----
3.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3. 제79조제1항----- -----
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82조제1항----- -----
5. 제6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5. 제83조----- -----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 따른 -----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68조(과징금 부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u>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같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제88조(과징금 부과) ① ----- ----- <u>영화제작업자 또는 영화배급업자가 제37조제1항</u> ----- ----- ----- ----- -----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u>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같</u>	② ----- <u>영화시청제공업자</u> ----- ----- ----- ----- <u>대통령령이</u> ----- ----- <u>영업정지처분에 같</u>

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6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건전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
2. 비디오물의 유해환경 개선

⑤ (생략)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에 대하여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음하여 -----
-----.

1. 제79조제1항-----

2. 제83조제2호·제4호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3항까지-----

-----.

1. ---- 영화-----
2. 영화-----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84조제1항-----
영화업자등의 -----
----- 영화업자등에
대하여 제87조제1항 -----

-----.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② 제63조제5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들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비디오물제작업자들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들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제70조(폐쇄 및 수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미리 해당 비디오물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

-----.

② 제84조제5항에 따라 영화업자등-----
----- 제87조제1항 -----

----- 영화업자들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

----- 영화업자들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
-----.

제90조(폐쇄 및 수거) ① -----
----- 제37조 또는 제79조 -----

----- 제87조제1항 -----

----- 관계 공무원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합에 있어서는 ---
--- 사업자 -----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해당 비디오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비디오물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비디오물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

③ -----

제75조제1항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 관계 공무원-----
-----.

④ ----- 관계 공무원이 해당 영화를 -----

-----.

⑤ ----- 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거·폐기를 함에 있어서 ----- 영화단체-----
-----.

⑥ ----- 따른 -----

----- 영화단체-----

-----.

⑦ ----- 영화가 제75조제1항 -----

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게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생략)	----- ----- ----- ----- -----. ----- -----. ⑧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안 제2장제6절·제7절은 아래 표와 같이 현행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을 ‘영화업자등’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영화업자등’의 정의 관련 현행 및 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안
비디오물제작업자등	영화업자등
비디오물제작업자	영화업자(영화제작·배급·상영업자)
비디오물배급업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영화시청제공업자

다만, 비디오물제작업의 신고에 관한 현행 제57조가 개정안에 따라 삭제된다면 안 제6절의 제목 중 ‘신고’ 부분도 함께 삭제될 필요가 있으며, 안 제81조 중 ‘신고증’의 교부 부분은 안 제37조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의 정리가 필요해 보임.

바.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보칙·별칙(안 제3장~제5장)

1) 개정안의 요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관한 안 제3장은 ‘비디오물’을 ‘영화’로 통합하고 그 밖의 조문 번호 등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히 변경되는 사항은 없음.

영화단체의 설립, 영화시청제공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 보칙을 규정한 안 제4장도 ‘비디오물’의 개념을 삭제함에 따라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별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안 제5장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 통합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 번호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3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u>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u> (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제91조(영상물등급위원회) <u>영화와</u> ---- ----- ----- -----.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2. (생략)	제92조(직무) ----- -----.
2의2.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 2. (현행과 같음) 3. 제68조제1호 -----

3. <u>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u> 4. <u>제7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 신청에 관한 사항</u> 5. (생략) 5의2. <u>등급분류책임자 및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u> 5의3. <u>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u> 6. (생략) 제73조(구성) ① <u>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② <u>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등·청소년·법률·교육·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u> ③·④ (생략) 제74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u>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 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신청,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u>	4. <u>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u>----- 5. <u>제94조제2항</u>-----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 <u>영화</u> ----- 8. <u>영화</u> ----- 9. (현행 제6호와 같음) 제93조(구성) ① ----- ----- <u>1명을 포함한 9명</u> ----- <u>구성한다.</u> ② ----- ----- ----- ----- - <u>자</u>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4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 ----- ----- 1. ----- -- <u>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등급분류신청, 제66조제3항-</u> -- <u>등급분류신청</u> -----
--	--

<u>비디오물의 등급분류신청</u> 등 이 법에 <u>따라</u>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 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 다)을 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 었던 <u>사람과</u> 공동권리자 또는 공 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 청한 사항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u>사람이</u> 신청한 사항 ② ~ ④ (생략) <u>제75조</u> (생략) <u>제76조</u>(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u>제73조</u>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부위 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u>따라</u>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 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u>제77조</u>(의결정족수) 영상물등급위원회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u>제72조제3호</u>의 사항은 재적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제78조</u>(회의공개) ① 영상물등급위원회 의 회의는 <u>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u>으	----- -- <u>의하여</u> ----- ----- ----- 2. ----- -- <u>자와</u> ----- ----- ----- 3. ----- ----- <u>자가</u> -----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95조</u> (현행 제75조와 같음) <u>제96조</u>(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제93조</u>----- ----- ----- ----- ③ ----- ----- <u>따른</u> ----- ----- ----- <u>제97조</u>(의결정족수) ----- ----- ----- <u>제92조제4호</u>----- ----- <u>제98조</u>(회의공개) ① ----- ----- <u>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u> -
--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9조(소위원회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생략)

제80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

② -----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
-----.

제99조(소위원회 등) ① -----
----- 제92조제1호-----

-----.

② ----- 제92조제2호
및 제3호-----
-----.

③ (현행과 같음)

제100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 -----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

-----.

② -----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

-----.

제8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

장 등) ① (생략)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8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생략)

③ (생략)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① (생략)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
에 따른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4조(사무국) ① (생략)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
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생략)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

제10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20조제1

호----- 자는
-----.

제10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

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제101조-----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92조제2호--

수행함에 있어서 -----
영화업자-----

-----.

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1명-----

-----.

③ (현행과 같음)

제10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

· 개정 · 폐지) ① (생략)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제6항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6조 (생략)

제5장 보칙

제87조(비디오물단체의 설립) ① 비디오물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비디오물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비디오물단체는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비디오물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 개정 · 폐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44조제7항에 따른 -----

-----.

제106조 (현행 제86조와 같음)

제4장 보칙

제107조(영화단체의 설립) ① 영화업자 -----
----- 영화단체 -----
--.

② 영화단체 -----.

③ 영화단체 -----
-----.

④ 영화단체는 영화 -----
-----.

⑤ 영화단체 -----

-----.

제108조(영화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
----- 영화의 -----
----- 영화시청제
공업자 -----
----- 대통령령이 -----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9조(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모범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0조(수수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3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32조에 따른 영화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 4의2.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자
5. 제51조에 따른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재분

-----.
제109조(모범적인 영화업자에 대한 지원) ① -----
영화의 -----

----- 영화시청제공업자-----
-----.

② (현행과 같음)

제110조(수수료) ① -----

-----.

-----.

1. 제44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등급분류를 ---
2. 제45조-----
3. 제46조-----

<삭 제>

4. 제66조제3항-----
5. 제73조에 따른 영화 -----

<삭 제>

<u>류를 신청하는 자</u> 7. 제66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1의3.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 제57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3.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61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 ④ (생략)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3. (생략) 4. 제9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삭 제> ② ----- ----- ----- 의하여 -----. 3. 제50조제1항----- 1. 제37조제1항----- 2. 제37조제3항----- <삭 제> 4. 제79조제1항에 따른 영화시청제공업의 ----- 5. 제8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1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자는 ----- ----- 의 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12조제2항 ----- ----- 자
--	--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생략)

③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93조(벌칙) 제7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3.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한 자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 또는 시

제11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대통령령이 -----
----- 의하여 -----

-----.

제5장 벌칙

제113조(벌칙) 제9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

-----.

제114조(벌칙) -----

-----.

1.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

상영·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한 -----
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 -----
----- 입장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한 -----
3.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 -----

4.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 -----

청에 제공한 자	-----
5.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u>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에 제공한 자</u>	5. 제76조제1항----- ---- <u>영화를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u> -----
6. 제5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u>비디오물을 유통한 자</u>	6. 제76조제2항----- ---- <u>영화를</u> -----
7. 제62조제4호를 위반하여 <u>비디오물 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u>	7. 제83조제4호를 위반하여 <u>영화감상실,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u> ----- ----- -----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5조(벌칙) ----- ----- -----.
1. 제29조제6항의 <u>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u>	1. 제44조제6항----- ---- <u>상영·유통하거나 시청제공을 한</u> -----
2. 제33조의 <u>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u>	2. 제47조를 위반하여 <u>제한관람</u> ----- ----- ----- <u>제한상영관 또는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 밖</u> ----- -----
3. 제43조제3항의 <u>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관에서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영화를 상영한 자</u>	3.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u>제한상영관 또는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에</u> 서 제44조제2항제1호----- -----
4. 제45조에 따른 <u>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4. 제62조----- -----
5. <u>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u> 가지지 아니한 자가 <u>거짓이나 그</u>	5. <u>영화</u> ----- ----- <u>거짓</u> -----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u>제50조제1항</u>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거나 <u>제51조제1항</u>에 따른 복제·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 6. <u>제53조제1항</u>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유통·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자 7. <u>제53조제3항</u>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 8. <u>제53조의2제3항</u>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 <u>제50조제3항제1호</u>부터 <u>제4호</u>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9. <u>제58조제1항</u>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u>비디오물시청제공업</u>을 영위한 자 10. <u>제62조제2호</u> 또는 <u>제3호</u>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u>제66조제5항</u>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u>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u>안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u>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u>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12. <u>제67조제2항</u>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营业을 계속한 자	----- <u>제44조제1항</u>----- <u>제73조제1항</u>----- ----- 6. <u>제75조제1항</u>을 위반하여 불법영화를 ----- ----- ----- 7. <u>제75조제3항</u>----- ----- ----- 8. <u>제76조제3항</u>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에서 <u>제44조제2항제1호</u>부터 <u>제4호</u>까지에 따른 영화를 ----- ----- 9. <u>제79조제1항</u>----- ----- <u>영화시청제공업</u>----- 10. <u>제83조제2호</u> 또는 <u>제3호</u>----- ----- ----- <삭 제> 11. <u>제87조제2항</u>-----
---	---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6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6조의2(벌칙) 제3조의4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9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제116조(벌칙) -----

-----.

<삭 제>

1. 제87조제1항-----
2. 제90조제1항 ----- 관
계 공무원-----

제117조(벌칙) 제6조-----

-----.

제118조(양벌규정) -----

-----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

-----.

제119조(과태료) ① -----

-----.

1. 제44조제4항 또는 제5항-----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u>상영등급</u>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u>입장시킨 자</u>	----- ----- <u>등급</u>----- ----- - <u>입장시키거나 시청하게 한</u> ---- -----
2. <u>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u>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2. <u>제46조제1항</u>----- ----- ----- ----- -----
3. <u>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u>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자	3. <u>제46조제2항</u>----- ----- -----
3의2. <u>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4. <u>제70조제1항</u>-----
4. <u>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u>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자	5. <u>제75조제2항을</u> ----- <u>영화를</u> -- -----
5. <u>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u>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지 아니한 자	<삭 제>
6. <u>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u>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자	<삭 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의2. <u>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u>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1. <u>제37조제1항</u>-----

2. <u>제35조제1항의</u>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u>제49조제1항</u> ----- -----
3. <u>제36조제1항의</u>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 을 설치·경영한 자	3. <u>제50조제1항</u> ----- ----- -----
4. <u>제37조제1항</u>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4. <u>제51조제1항</u> ----- ----- -----
4의2. <u>제37조제4항</u> 을 위반하여 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u>제51조제4항</u> -----
5. <u>제39조제3항</u> 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 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 산망에 전송한 자	6. <u>제56조제3항</u> -----
6. <u>제41조의</u>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u>제58조를</u> -----
7. <u>제44조의</u> 규정을 위반하여 영사관 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 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8. <u>제61조를</u> -----
8. <u>제61조제1항의</u> 규정을 위반하여 <u>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u> 을 하지 아니한 자	9. <u>제82조제1항</u> 을 ----- <u>변경등록</u> 을 -----
9. <u>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u>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 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	10. <u>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u>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3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 ----- -----. 1. 제37조제1항 후단----- ----- 2. 제50조제1항 후단----- ----- ----- 3. 제63조제1항·제2항 또는 제84조제1항·제2항----- ----- 제120조(과태료의 부과) 제119조 ---- ----- ----- -----.
--	---

2) 검토의견

안 제3장 및 제4장은 대부분 ‘영화’ 및 ‘비디오물’을 통합하고 기존의 인용 조문과 가지 조문의 조 번호 등을 수정하여 정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다만, 안 제103조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의 ‘영화업자’ 외에도 ‘영화시청제공업자’를 함께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영화업자’를 ‘영화업자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안 제107조에 따라 영화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자에도 ‘영화 시청제공업자’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영화업자’를 ‘영화업자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110조의 경우 기존의 제4호를 삭제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도 ‘제4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안 제5장은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앞의 안 제1장부터 안 제4장까지의 내용이나 조문 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이에 맞추어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겠음.

사. 부 칙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의 부칙은 시행일 및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부칙 원문]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영화수입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화수입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화배급업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자 및 비디오물배급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및 영화배급업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영화시청제공업, 영화감상실업, 영화소극장업,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업 및 그 밖의 영화시청제공업으로 본다.
제4조(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상자료원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상자료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영화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영화발전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행한 등급분류 등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신청 등으로 본다.

제7조(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설립된 비디오물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단체로 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로 한다.

②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제1호”를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137조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로 한다.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5호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의3제1항제2호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9호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검토의견

부칙은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안 제4조는 한국영상자료원의 ‘직원’에 대해서만 개정법에 따른 직원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임원’을 함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현행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전부개정 내용에 맞춰 함께 개정하는 안 제9조의 경우 개정안에 열거된 법률 외에도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청소년 보호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함께 개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

협회 및 민간업계 등 의견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2024.7.12)	• 영화의 정의상 VOD서비스도 같은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제작 콘텐츠 전체도 '영화' 범위에 속하는지 개념상 의문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콘텐츠의 경우 부과금의 징수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일반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OTT 제작 콘텐츠는 한국영화산업발전이라는 정책목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 방송목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부과금을 징수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OTT제작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함 •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를 요하지는 아니하나 영화업자로 포섭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방송사업자가 방송목적으로 제작한 콘텐츠는 '영화'라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방송콘텐츠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는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서 규제 목적 법률이 아닌 진흥 목적 법률에 해당하는 본 법의 취지에 배치됨
한국인터넷기업 협회 (2024.7.15)	○ 영화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를 "비디오물" 및 "온라인비디오물"에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별 조항별로 적절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청소년 유해성 확인 (제46조), 원판제출 의무 (제49조), 표준보수지침 (제5조), 실태조사 (제12조), 성폭력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 (제9조) 등 규제 신설 초래 ○ 콘텐츠별 유통방식·형식·내용상의 차이 및 다양성을 간과 - 개정안에 따르면 드라마·예능·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이용자 제작 콘텐츠 (예: 유튜브), 광고, 방송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영화로 분류되어 추가 규제를 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산업에 대한 영향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 ○ 사회적 및 규제적 측면에서 명확성, 법적 안전성이 위반되어 수범자 입장에서 혼선으로 이어질 위험 - 개정안의 "영화" 개념이 「영상진흥기본법」의 "영상물", 「방송

	법」의 “방송프로그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전기통신사업법」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타법상 유사 개념과 상충
한국방송채널 진흥협회 (2024.7.15)	• 영화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유튜브 영상 등 온라인 동영상도 포함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 기준을 명시할 필요 - 특히, OTT 콘텐츠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 등에 있어 시장의 혼란을 초래 • OTT 등 동영상이 부과금 징수, 통합전산망 등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와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짐
한국IPTV 방송협회 (2024.7.15)	• 유료방송은 방송법·IPTV법에 따라 VOD에 대한 약관·요금 등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방송 관련 법령과 충돌 및 중복 규제 우려 • 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과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통합미디어법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
한국영화관 산업협회 (2024.7.19)	• ‘영화관 상영 영화’와 ‘온라인 상영 영화’ 구분 필요 - 영화상영관은 자체등급분류가 도입되어있지 않으며, 스크린쿼터 의무상영, 영화상영등급에 따른 입장관리 의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관련 의무 등이 있으나, 온라인사업자는 그렇지 않음. 양자 간 형평성 및 영화산업 내 이중적인 제도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됨 - 온라인상영 영상물이 법체계상 영화로 편입된다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규제적용 필요
한국영화 프로듀서조합 (2024.7.22)	• 개정안에 따른 ‘영화’의 정의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 만으로는 영화 개념 확장의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는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뉴스, 스포츠중계 등 다양한 영상물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영화가 영화상영관, 정보통신망 등 배급, 전송방식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임. 다른 나라의 사례, 학계와 업계의 의견 등을 파악해서 영화의 내적 정의 도출 과정 필요
한국독립영화 협회 (2024.7.22)	• (제35조 제1항) 부과금 징수관련 조항과 관련, 관람객이 아닌 상영관과 제작/배급사에게 부과 (영화발전기금 부과 대상에서 관람객 삭제) • (제35조 제1항) 부과금 징수요율을 3% → 3%~5% 사이로 수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수정

한국상영발전협회 (2024.7.22)	•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와 온라인 영화의 구분이 필요 - 단순 극장영화와 동일한 영화산업의 범주로 통합하는 것은 OTT에는 적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등급심의제도, 스크린쿼터제, 영화상영입장권 통합전산망, 입장권 부과금 등) 있어 극장사업자와 OTT사업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특성에 맞는 정책과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
--------------------------------	--

○ 민간업계 의견

업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티빙 (2024.7.15)	•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영화 범위의 확대는 이용자 혼선 및 사업자 갈등 유발 우려 - OTT는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 등 다양한 산업군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미디어 플랫폼이기 때문에 특정 장르로 규정되어 오던 영화의 범위에 OTT 콘텐츠를 포함할 수 없음 - 특정 관객에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와 달리, OTT콘텐츠는 유통구조에 따라 전송의 개념을 사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하기에, 영화 범위에 OTT를 포함할 경우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는 음악저작권사용료 이슈에 더 큰 혼란 야기 •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징수대상에서 OTT사업자 제외 필요 • 자체등급분류제도의 경우 현행법대로 운영하여 올바른 제도 정착 추진 필요
왓차 (2024.7.15)	• 해당 법률안은 영화의 개념을 확장해 사실상 모든 영상물을 법률적으로 영화로 정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 영상콘텐츠를 제작·유통·향유하는 국민생활과 심각하게 괴리 - 국민들은 방송·OTT를 통해 흔히 접하는 시리즈물과 구분하여 '영화'를 인식하며, 종사자 역시 영화업과 방송을 포함한 기타 시리즈물은 산업적으로 구분되어 왔으나, 현실과 괴리된 법률이 제정될 경우 혼란과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영화'는 다양한 영상콘텐츠 중 독특한 위상과 지위를 갖는 하나의 분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 산업현실 역시 '영화'산업은 전체 영상산업 중 일부분에 해당됨. * 2021년 기준 영화산업의 규모는 3조2461억원, 방송산업은 23조9707억원 • 영화 정의 확장 시,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간 역할이 중첩 내지는 혼동되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기존에는 영화가 아니었던 영상물을 영화에 포섭시킴으로써 과도한 규제나 의무가 생겨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한국영상자료원 영상제출의무 등)
콘텐츠웨이브 (2024.7.15)	• 본 전부개정안은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영화 정의로 통합해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적보다 특정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 - 현재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영상 및 영화산업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나 구체적 근거 부재, 용어 정의를 물리적으로 통합할 뿐 오히려 미디어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개정안의 목적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으로 명시해 두고 이후 관련 조문들은 영화로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있어 법률상 체계가 맞지 않음 - 규제강화로 귀결, 현 정부의 OTT 진흥정책 방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결과 초래 * 실태조사, 기금부과,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통합전산망, 한국 영화 상영 등에 대한 의무 부과
CJ ENM (2024.7.15) * 한국방송채널 진흥협회와 의견 동일	• 영화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유튜브 영상 등 온라인 동영상도 포함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 기준을 명시할 필요 - 특히, OTT 콘텐츠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 등에 있어 시장의 혼란을 초래 • OTT 등 동영상이 부과금 징수, 통합전산망 등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와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2024.7.16)	• "영화"와 "비디오물"의 차이와 각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통합 - 개정 전 영화의 정의에 부합하는 하위 유형 (애니메이션/소형/단편/예술/독립)을 그대로 유지하여, 시리즈물 등 OTT 콘텐츠는 어떤 유형으로 포섭할지 의문 - 실제 적용 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의무 부담으로 혼란이 발생할 것 • 영화업자에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글로벌 OTT 플랫폼사 등)도 포함시켜 본 법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 • 현장의 차이가 있음에도, 기존 법의 '영화'에 적용되던 법령 또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우며 산업 전반에 혼란 야기 우려 - 표준보수지침, 영화노사정협의회, 표준계약서, 안전사고 보호 조치 의무, 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등의 규제 적용은 영

	제한 OTT 콘텐츠·뮤직비디오 제작업자 등에 비용적·시간적 부담이 존재 • 상영권 입장권 부과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기금을 기존 영화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의문 • 유튜브 등에 바로 업로드 되는 콘텐츠도 등급분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모호하며, 예고편 및 광고도 별도 등급분류 대상이 되어 콘텐츠 유통 계획의 예측 가능성이 매우 저하될 우려
롯데컬처웍스 (2024.7.22)	• 영화업자 간 형평성 문제 우려 - 극장 영화 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 부재 등 확대되는 영화업자 간 불균형 해소 방안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 우려됨. • 영화발전기금 재원 다각화 필요 - 영화관 입장객 감소에 따른 부과금 감소로 영화발전기금 고갈 위기 초래됨. - 기금 재원 다각화 없는 지원 대상의 확대에 의해 기존의 극장 영화 산업에 대한 사업 축소 우려됨.
메가박스 (2024.7.23) * 한국영화관 산업협회와 의견 동일	• '영화관 상영 영화'와 '온라인 상영 영화' 구분 필요 - 영화상영권은 자체등급분류가 도입되어있지 않으며, 스크린쿼터 의무상영, 영화상영등급에 따른 입장관리 의무, 영화상영권입장권 통합전산망 관련 의무 등이 있으나, 온라인사업자는 그렇지 않음. 양자 간 형평성 및 영화산업 내 이중적인 제도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됨 - 온라인상영 영상물이 법체계상 영화로 편입된다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규제적용 필요